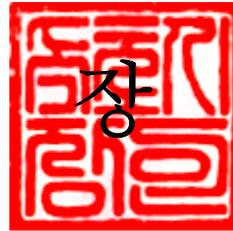


자동차검사 안내서, 과태료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경과의통지)에 의거 검사사 전안내 및 경과안내 통지문과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기검사 지연(미필)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처분통지서,과태료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08일

속 초 시



아 래

1. 대상자 : 윤행수 외 135명
2. 공고기간 : 2012. 02. 08 ~ 2012. 02.23
3. 서류의 명칭 :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서, 사전처분서 등 과태료관련우편물 반송분
4. 서류의 내용 및 반송사유 : 붙임 내역서 참조
5. 의견진술 등

자동차정기검사 미검자는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본 사항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부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고지서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속초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33-639-2192)